

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대표발의 : 신성봉 의원)

의안 번호	147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29.

발 의 자 : 신성봉 · 권태호 · 박채연
이명녀 · 강혜경 · 안영호
문희성 · 노세영 (8명)

1. 개정이유

자연재해 예방·복구 등 지역자율방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연재해 예방·복구 등 지역자율방재 활동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 조항 신설(안 제36조)
- 나. 시행규칙조항에 관한 문구 정리 (안 제37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
- 나.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2조, 제5조

4. 조 례 안 : “따로 붙임”

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표발의 : 신성봉 의원)

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표창) 구청장은 방재활동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재단 및 방재단원에 대해서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37조 중 “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36조(시행규칙) <u>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제36조(표창)</u> 구청장은 방재활동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재단 및 방재단원에 대해서는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</u>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제37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</p>